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한국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 월 21 일

여 수 시 장

민기현



여수시 조례 제1765호

붙임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편의 시설 및 사업) ①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여수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 마련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